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이 약관은 예금주와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의 외화예금거래에 적용되며 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에 비치하고 예금주는 영업시간 중 언제나 이 약관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장 공통사항

제1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다음 각호의 거래에 적용하기로 합니다

1. 외화보통예금
2. 외화당좌예금
3. 외화정기예금

제2조 (지급시기)

- ① 외화보통예금 및 외화당좌예금은 예금주가 청구할 때 지급합니다.
- ② 외화정기예금은 만기일 이후 또는 거치기간 경과 후 예금주가 청구할 때 지급합니다. 단, 예금주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는 그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이자계산)

외화예금의 이자는 다음 각호의 국제관행에 따른 통화별 연간일수를 적용하여 예금통화의 보조단위까지 계산하며 보조단위 미만은 버립니다.

1. 영국파운드화(GBP), 호주달러화(AUD), 뉴질랜드달러화(NZD), 홍콩달러화(HKD), 싱가포르달러화(SGD), 러시아루블화(RUB), 남아프리카공화국랜드화(ZAR), 폴란드플로티화(PNL), 브라질헤알화(BRL) : 365 일 적용
2. 제 1 호 이외의 통화 : 360 일 적용

제4조 (적용환율 및 수수료)

- ①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로 합니다. 단, 미국달러화를 현찰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입금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할 때의 적용환율은 은행이 고시한 대고객 현찰매입율로 합니다.
- ② 미국달러화 이외의 외화현찰을 외화예금에 입금하고자 할 때에는 은행이 계산근거를 명시하여 청구하는 바에 따라 예금주가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 ③ 미국달러화 현찰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입금일로부터 7일 이내에 외화로 인출하고자 할 때에는 은행이 계산근거를 명시하여 청구하는 바에 따라 예금주가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 ④ 외화현찰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현찰로 인출할 때에는 은행이 계산근거를 명시하여 청구하는 바에 따라 예금주가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 ⑤ 은행은 상기 ②~④항과 관련한 수수료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도록 합니다.

제5조 (약관의 적용)

- ① 예금주와 은행이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약관 조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② 외화예금거래에는 외화예금 종류별 특별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거치식예금약관, 적립식 예금약관 및 외환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되며, 외화예금 취급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규 등 관련 법령과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및 감독기관이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6조 (약관의 변경)

- ① 은행은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 내용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시행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합니다.
- ② 제1항의 변경 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 등 이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제1항 단서 사유에 의한 변경으로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시행 즉시)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이용자에게 변경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이용자가 변경 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합니다.
-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 약관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다만, 제1항 단서 사유에 의한 변경으로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합니다.
- ④ 이용자가 제3항 본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 약관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2장 외화보통예금

제7조 (이자)

- ① 이 예금의 이자는 매년 3 월, 6 월, 9 월, 12 월의 셋째주 금요일(단, 공휴일인 경우 직전영업일, 이하 “기준일”이라 한다)에 쌍하여 기준일의 다음일(이하 “원가일”이라 한다)에 원금에 더합니다.
- ② 이 예금의 이자는 처음 예금일 또는 지난 원가일로부터 원가일 전날까지를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최종잔액을 평균하여 은행이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통화별 외화보통예금 이율로 계산합니다.

제3장 외화당좌예금

제8조 (지급특례)

은행은 예금주의 수표·지급청구서 없이 이 예금을 예금주의 은행에 대한 다음 각호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1. 각종이자, 지연배상금, 보증료, 수수료
2. 수입어음원금, 외화표시 내국신용장결제대금, 수출환어음 및 외화수표부도대금
3. 기타 대체결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채무

제9조 (이자)

이 예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0조 (준용)

수표용지교부, 수표금지급과 지급위탁취소, 수표초과지급과 일부지급거절, 수표금 지급과 면책, 잔액·거래명세 정리, 해지, 해지후 처리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제4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합니다.

제4장 외화정기예금

제11조 (이자)

① 이 예금 이자는 약정한 가입기간에 따라 가입일 당시 은행 영업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한 외화정기예금이율의 가입기간 해당 이율로 계산하여 만기일 이후에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다만 이자지급식 예금은 예금주의 선택에 따라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금주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합니다.

② 예금주가 만기일 이후에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예치원금의 최종잔액에 대해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가입일 당시 약정이율의 3/10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만기일 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급을 청구한 때는 가입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중도해지이율로 계산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이자가 있는 때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뺍니다.

1. 7 일 미만 : 무이자
2. 7 일 이상 1 개월 미만 : 가입당시 약정이율의 1/10
3. 1 개월 이상 3 개월 미만 : 가입당시 약정이율의 3/10
4. 3 개월 이상 6 개월 미만 : 가입당시 약정이율의 4/10
5. 6 개월 이상 : 가입당시 약정이율의 6/10
다만, 365일 이상인 경우 약정이율의 8/10

제12조 (장기예금으로 계약변경과 이자)

- ① 이 예금을 만기일 전에 처음 약정한 가입기간보다 긴 가입기간의 예금으로 계약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10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처음 가입일로부터 계약변경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10조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뺍니다.
- ② 계약 변경한 예금을 변경된 만기일 이전에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그 이자는 변경전 처음 가입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10조 제3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3조 (가입기간의 갱신과 적용이율)

- ① 이 예금은 예금주가 예금 개설시 또는 만기일 이전/이후에 가입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만기일(휴일인 경우 다음 은행영업일)에 전과 동일한 기간 또는 예금주가 별도로 정한 기간으로 자동갱신 처리합니다.
- ② 갱신된 예금의 이율은 갱신된 날을 가입일로 하여 제 10조에 따라 적용이율을 정합니다.

2017. 8. 18 개정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7-약관-0107호